농어촌민박사업자

서비스·위생·소방안전 교육

농림축산식품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

교육 진행 순서

1 농어촌민박사업 제도(서비스·위생 및 안전기준)

- 민박사업자 교육은 왜?
- 농어촌민박사업이란?
-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제도 변천
-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는?
-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?
-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
-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·위생, 소방안전 등 준수사항

2 농어촌민박사업 위생 및 소방·안전 사고 예방

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현황

가평군

(2020. 9. 30. 기준/단위: 개소)

계	가평읍	설악면	청평면	상면	조종면	북면
1,210	263	157	214	184	79	313

* 2019. 12. 31.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: 경기도 3,116개소, 전국 28,517개소

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현황

경기도

구분	계	가평	양평	안산	포천	용인	화성	파주	남양주	광주	양주	연천	안성	여주
민박수	3,116	1,173	574	408	218	135	114	104	96	80	74	56	41	43

가평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현황

가평군

구분	계	부산	인천	대구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세종
민박수	28,517	96	1,242	8	1	10	189	3,116	5,726	1,305	1,826	1,239	3,211	2,570	3,673	4,296	9

민박사업자 교육은 왜?

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이수 의무

<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(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>

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실시하는

3시간의 서비스 · 위생 · 소방안전 교육 이수

미이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<법 제132조제1항 제2의2>

농어촌민박사업이란?

농어촌민박사업 신고제도 변천

농어촌민박사업 제도

농어촌민박사업이란?

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

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· 취사시설 ·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

<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>

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제도 변천

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· 지정 제도

❍ **1993.6.11. :** **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입**된 제도로서
시장·군수 등의 지정을 받고 민박사업 운영<농어촌발전특별법>

❍ **1999. 2. 5.** :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**지정 제도 폐지**

※ 그 후 운영자의 범위를 농어민에서 농어촌거주자로 계속 완화조치

❍ **2005. 11. 5.** : **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재 도입**

※ 상업화·대형화된 펜션(Pension)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면서
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제도 재도입 후 현재는 신고 제도로 운영

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제도 변천

최근 민박사업 신고기준 등 변경사항

❍ **변경신고 미이행자 과태료** 행정처분 신설(2019.7.16.시행)

❍ 소방안전,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설치 등 설치 **기준 및 행정처분 강화**(2019.12.31.시행)

❖ 기존: 소화기 1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별 설치

❖ **안전기준 신설 이전 민박사업신고자 소급적용**

❍ 민박사업장 표시 의무 신설(2020.8.12.시행)

❍ 연1회 「**전기**사업법」 및 「액화석유**가스**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**안전점검 의무신설**

❖ **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 및 행정처분 신설**(2020.8.12.시행)

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는?
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?

농어촌민박사업 제도

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는?

민박사업 면적 제한

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

(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)

- ❖ 주택의 동수 제한 폐지,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산,
- ❖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함.

- 단,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제한 없음

농어촌민박 사업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?

주택 직접 소유자 신고하는 경우

❍ 신고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

* 가평군은 전지역이 농어촌 지역

❍ 관할 시·군·구(가평군)에 6개월 이상 **계속하여 거주**있을 것(민박신고 주택을 상속한 경우 제외)

❍ **신고자가 거주**하는 단독주택(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**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**)

* 민박신고 주택의 주소와 신고자의 주민등록 주소 일치

❍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

농어촌민박 사업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?

주택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

❍ (공통기준) **주택 직접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의 기준을 모두 충족**(직접소유 요건의 예외)

❍ **처음 민박사업을 경영하는 사람(방법1)**

- 신고일까지 관할 시·군·구 (가평군)에 3년 이상 **계속하여 거주**하였을 것
- 임차하여 신고 후 2년 이상 **계속하여**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

❍ **과거 일정기준 이상 민박사업을 경영을 한 사람(방법2)**

- 관할 시·군·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,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2년 이상 **계속하여 운영**하였던 사람

  *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

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
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

농어촌민박사업 제도

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

소방안전 기본시설

❍ **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, 휴대용 비상조명등** 설치

❍ **피난유도표지** 설치: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민박시설

피난 유도등 설치: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민박시설

❖ 2019. 12. 30.까지 착공한 주택은 피난유도 표지로 갈음 가능

❍ **완강기** 설치 :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이상인 건물

❖ 3층부터 객실마다 설치

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

화기취급처 안전시설

❍ **설치장소 :** 난방기 설치장소, 보일러실, 주방 등 화기 취급처

❖ 난방기: 가스, 기름, 화목,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에 한함

❍ **설치기기 :** 일산화탄소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(가스보일러 사용에 한함), 소화기, 자동확산소화기

❖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객실에도 설치

- 객실마다 설치, 다만,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

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

조식 제공을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

- **냉장고 :** 음식의 원재료 보관용
- **조리· 세척시설 :** 위생적인 음식물 조리 및 세척용
- **주방 환기시설**
  - ❖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
- **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**
  - ❖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

〈공통기준〉

❍ **신고확인증 및 요금표**(조식제공시 민박요금에 포함)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 **게시**

❖ 투숙객 대상 조식 제공이 가능하나 사전신고 후 가능

❍ **서비스·위생 ·소방안전교육 매년 이수(3시간)**

❍ **매년1회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**을 받은 후 그 사본 제출

❖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른 점검

❍ **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·설치**

❖ 민박 주택의 **출입문** 및 인터넷 **홈페이지 메인 화면**(홈페이지가 있는 경우)

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번호

가평 제 00-0001

희망행복 민박

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

숙박위생 안전기준

❍ **민박시설 전체 소독**

- 소독주기 **: 매월 1회 이상**
- 소독대상 : 객실·접객시설 ·복도 ·샤워시설 ·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시설 전체

❍ **민박시설 용품 세탁**

- 세탁주기 **: 투숙객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**하고 수시로 햇빛 또는 기계건조
- 세탁대상 : 이불 ·베게 등 침구류와 수건

❍ 환기를 위한 **창문 설치** 및 **수시환기**

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

식품위생 안전기준

❍ **주방은**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청결하게 유지·관리**

❍ **조리 할 때**

❖ **개인위생 유지**, 도마·칼 ·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 청결하게 유지·관리

- 사용후 **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·살균**

❍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 **냉동·냉장시설 보관 ·관리**

❍ 객실내 **먹는물 제공**(갖추고) 및 **위생적 관리**

❖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

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

소방안전 기준

❍ **소방안전, 화기취급시설 등에 설치된 시설은 정상작동하도록 유지·관리**

❖ 소화기, 피난구유도등 또는 피난유도표지, 단독경보형 감지기, 일산화탄소 경보기, 가스누설 경보기, 휴대용비상조명등(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설치)

❍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소방안전 기기 등은 정상적인 상태 유지가 가능하도록 **건전지교환**

❖ 휴대용 비상조명등,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등

❍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**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** 하여야 함

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

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및 그 밖에 사항

❍ 화기취급처에는 **환기 유지** 및 **가연성 물질** 가까이 비치 **금지**

❍ **난방시설 정기 점검** 등으로 정상작동하도록 유지·관리

❍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 금지

❍ 청소년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

❍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**변경신고(미이행시 과태료 부과)**

(부　　록)

소비자분쟁해결기준

[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-3호, 2019. 4. 3., 일부개정.]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"분쟁당사자"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**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**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, 별표 Ⅲ, 별표 Ⅳ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공정거래위원회는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334호)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　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Ⅰ>

대 상 품 목

번호	업 종	품 종	해 당 품 목
26	숙박업	◦숙박업	호텔, 여관, 펜션, **민박**, 휴양림, 오토캠핑장, 캠핑장

소비자분쟁 해결기준(품목별 해결기준)

숙박계약 취소 분쟁해결기준 유형

❍ **시기별:** 성수기 주중, 성수기 주말, 비수기 주중, 비수기 주말

❍ **책임 소재별**

- ❖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❖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❖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숙박 당일 계약 취소 등

❍ 거짓,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·광고를 한 경우

소비자분쟁 해결기준(품목별 해결기준)

숙박업 (2-3)		
분 쟁 유 형	해 결 기 준	비 고
3) 비수기 주중		
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o 계약금 환급	
.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	o 총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	
.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	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	
.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	o 계약금 환급	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	
.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	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	
.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		
.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		

소비자분쟁 해결기준(품목별 해결기준)

숙박업 (3-3)		
분 쟁 유 형	해 결 기 준	비 고
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		*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
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	o 계약금 환급	
- 이용이 불가한 경우	o 계약금 환급	
6) 거짓,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o 계약금 환급	

농어촌민박사업 위생 및 소방·안전 사고 예방

- 화재사고 및 가스 전기사고 예방 -
-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-
- 식중독 등 각종 사고 예방 등 -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다음장부터 보여드리는 저작물은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저작물로 "공공누리", "국민재난안전포털"에서 **출처표시-상업적이용금지-변경금지** 조건에 따라 무료로 다운로드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!